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6년2월25일(수) · 주간제8호 · 통권 제1768호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3월 3일 월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6/ 2/ 25 통권 176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경영판단 원칙 적용
  - "합리적 검토 "의 실무 요점 (2)
-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폐기물 매립장이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효용을 갖고 거래되는 구조물이면 토지계정 아님 (p.11)
-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200만원 업무추진비의 기본 한도가 적용됨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2026년 감사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적용금액 기준안내〉

1. 감사계약서등 : 인지세 과세문서의 기재금액계산시 부가세 10% 별도라고만 기재되어도,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포함하여 기재금액 초과여부를 판단함.(인지세법 기본통칙 : 4-8…6)

- 기재금액(부가세 포함) 1천만원까지 : 인지세 없음(909만원×1.1 = 총 999만9천원 : 인지세 0원)
-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까지 : 1년당 2만원
-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5천만원까지 : 1년당 4만원
-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까지 : 1년당 7만원
-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까지 : 1년당 15만원
- 기재금액 10억원 초과~한도 없음 : 1년당 35만원

2. 과세단위

① 원칙적으로 계약서(원본) 1통마다 납부 : 갑과을 각각 보관하는 별도계약서 날인되면 2통으로 보아 2건 납부(갑계약서는 갑, 을계약서는 을이 각각 납부하는 관행)

② 갑과 을간에 원본 1통(나머지는 사본보관)으로 합의작성되면 인지세는 1건만 납부)

3. 납부방법

① 계약서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 납부·소인(재활용 금지)

② 우체국에서 수입인지 구입해 계약서에 붙인 후 소인(재활용 금지)

③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전자문서 작성시 납부 인정(납부영수증 전자파일 : 1건 유효)

4. 납부기한(세무 관련 계약서도 계약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① 계약서 체결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12월말 법인이면 외감외주요계약월은 2월이고 : 3월 10일까지 납부)

② 12월말 결산법인의 초도감사는 4월 30일까지 계약일이므로, 5월 10일까지 납부

5. 미납시 본세와 3배 가산세 추가 추징(국세기본법) : 인지세 적법세액 + 3배의 가산세 추가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68호 / 주간 8호 2026. 2. 25.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2026년 감사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적용금액 기준안내	표지
CEO의 경영산책	경영판단 원칙 적용 - "합리적 검토 "의 실무 요점 (2)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 -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의 과세 - 부가가치세신고서 양식 중 문의드립니다 - 세탁오폐수처리시설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4 5
눈에맞는절세미인	연간 75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6
매일절세재무요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방안 - 생산적 금융 ISA의 유형별 개요	8 9
직장인Survival	자신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는 법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646, 2025.06.25) -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45, 2025.04.17)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 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	13
마케팅 Tax consulting	- 폐기물 매립장이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효용을 갖고 거래되는 구조물이면 토지계정 아님 -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200만원 업무추진비의 기본 한도가 적용됨	11 12
세무정보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14 19 26 31 42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0

경영판단 원칙 적용
- "합리적 검토 "의 실무 요점 (2)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보호를 받으려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는 절차 "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 회사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고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이 문서와 기록으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실무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 법리상 요구되는 '합리적 검토'

대법원은 이사의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이사가 (1) 법령·정관 위반 없이, (2)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는 후, (3) 그 정보에 기초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4)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 판시하고 있다. 또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기대되는 이익도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이익이어야 하므로, 일반적 추상적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정보 수집 분석 단계의 실무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중요 정보를 확보 정리하는 절차 설계가 요구된다.

- 거래·의사결정을 성격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 목록을 사전에 정의: 재무적 효과, 법률 규제 리스크, 이해상충, 대안 시나리오, 외부 환경 등 검토
- 내부자료와 외부자료를 병행하여 수집: 재무제표 사업계획, 리스크관리보고, 관련 법령 및 감독지침, 시장, 산업 리포트, 외부 전문가(법률·회계·기술 자문) 의견 등.
- 시간·비용·위험 규모를 감안해 정보의 "충분성 "을 판단하고, 추가 정보 수집이 비현실적이거나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수집된 정보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대안 별 손익, 리스크 비교, 민감도 분석 등으로 구조화하여 보고서 형태로 이사회 또는 의사결정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사결정 과정 기록

경영판단의 원칙은 결과보다 "과정 "의 합리성을 중시하므로, 절차 설계와 기록이 중요하다.

- 다단계 검토: 실무부서 → 관련 지원부서(재무·준법·리스크) → 임원회의 → 이사회로 이어지는 검토 라인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 이해상충 관리: 지배주주 또는 특정 이사의 이해와 회사 이익이 충돌할 여지가 있는 안건은 해당자의 의결·참여 제한, 독립이사 중심 심의, 외부평가 등을 활용한다.
- 회의록·보고서: 제공된 자료 목록, 핵심 쟁점, 제기된 이견, 질의응답 내용, 대안 검토 여부, 최종 결론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중한 토론을 거친 합리적 결론 "이었음을 사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 대규모 투자, ·M&A 등은 준법과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어떠한 검토가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 토의 및 검토가 요청된다.

◉ 판단 내용의 합리성 확보 포인트 예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최소한의 합리적 근거가 객관적으로 식별되어야 한다.

- 현실성 있는 이익과 리스크 비교: 예상되는 이익을 구체화(매출·비용·현금흐름, 전략적 시너지 등)하고, 실현 가능성과 리스크를 수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해 검토한다.
- 대안 검토: 예들 들면, 현상유지, 규모 축소, 시기 조정, 구조 변경 등 주요 대안을 비교 검토한다.
- 극단적 위험에 대한 인지와 대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인식, 손실 한도 설정, 헤지·보험계약상 보호조항 등 리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

상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을 위한 '합리적 검토 '의 실무는 (1) 사안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정보 수집, (2) 구조화된 분석 보고, (3)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 연계, (4) 토론·이견을 포함한 상세 회의록 작성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내부 지침·매뉴얼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

Q 당사는 경매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관리하는 법인입니다.
2개월 전 낙찰받은 부동산중에 대출 발생전 등기 된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어서 해당 보증금을 포함하여 낙찰 받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의사를 밝히며, 배당신청을 안했습니다.
현재시점에 보증금 반환신청을 했는데, 이때, 해당 반환할 보증금은 영업외비용으로 봐야할지, 취득원가 산정시에 합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했어야 하는지 난해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낙찰시점에 보증금 포함하여 낙찰받았다고 하니, 취득원가 산정시 합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의 과세

Q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질의 드립니다.
2021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금번 장기근속포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A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양식 중 문의드립니다

Q

(질문) 부가세 신고서 양식 31번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 갑설 :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닌 항목을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다.
(예시, 건물 및 구축물의 고정자산 매각금액, 직매장 공급금액 등)

'수입금액'의 의미를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입장
- 을설 : 손익계산서 항목 중 '매출액' 부분이 아닌 '영업외수익' 항목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즉, 주된 영업수익이 아닌 항목을 기재한다. '수입금액'의 의미를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입장

A

부가가치세 신고서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귀사의 질의중 갑설이 타당합니다.

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 시 자금 출연은 기부금 수입임

※통권 1766 · 1767호 내용 정정 보도

Q

표제 건에 대해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는 영리법인이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추진 중으로 출연금을 모두 당사에서 지급합니다.
이 때 당사는 지출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부금으로 보는게 타당한가요?

A

출연금 지급하는 영리법인은 기부금으로 비용반영, 출연금 받는 비영리법인은 실제로 받은 때에 (지정)기부금 수입(또는 출연금 수입)으로 운영성과표에 반영합니다.

연간 총 750만원 이하의 기타수입은 기타순소득 3백만원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인적용역 등을 일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기타소득은 통상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제공소득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의 세율로 신고 · 납부하는데, 결과적으로 총수입금액에 8.8%의 세율을 곱하여 신고 · 납부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신고를 하든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으로 역산하여 따져보면 연간 총수입금액은 750만원이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750만원(필요경비 공제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라면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는 것은 절세차원에서 당연한 납세자의 의무인 것이다.

필요경비공제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현행 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인데,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과의 비교판단으로 그 절세효과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과세하여 신고 · 납부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할 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4%나 35%, 38%, 40%, 42%, 45%의 세율이 적용되어 당연히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는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당연히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사례]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근로소득의 각종 소득공제금액은 2,200만원이라고 가정함)과 기타소득으로 750만원인 경우

1.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 750만원×40%×20%=60만원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소득공제)=2,800만원=(1,400만원×6%)+(1,400만원×15%)=84만원+210만원=294만원
총 납부세액 =① +② = 354만원

2. 기타소득을 종합합산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 : (750만원×40%)+(5,000만원-2,200만원)=300만원+2,800만원=3,100만원
소득세액 : (1,400만원×6%)+(1,700만원×15%)=84만원+255만원=339만원

상기의 사례를 도표로 비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종합소득합산과세
과세표준	기타소득:750만원 × 40% = 300만원 근로소득:5,000만원-2,200만원=2,800만원	300만원(기타소득)+2,800만원(근로소득)=3,100만원
소득세액	기타소득 : 300만원×20%=60만원 근로소득: 2,800만원×세율=(1,400만원×6%)+(1,400만원×15%)=294만원 총세액 : 60만원+294만원=354만원	(1,400만원×6%)+(1,700만원×15%)=339만원
세액비교	기타소득을 종합소득합산하여 신고한 경우가 15만원 절약됨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방안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3구 · 용산구)	신규 조정대상지역 (그 외 서울 전지역 · 경기 일부)
적용 대상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계약 기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	계약후 4개월 이내	계약 후 6개월 이내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수	• 첫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면제 • 2년(2028년 2월 11일) 내 입주 • 매수인은 무주택자 한정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	현행 : 대출 후 6개월 내 개선안 : '대출 후 6개월' 또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火 국내투자 · 외환안정 세제 지원 주요 방안

• 해외주식 매각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주식에 장기투자시 인당 일정 매도금액 한도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지원
•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가 소득공제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

生산적 금융 ISA의 유형별 개요

	청년형 ISA	국민성장 ISA
투자 가능 자산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대상자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만 19세 이상 거주자
세제 혜택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 · 초과 수익에 대한 적용 세율 인하 등 세제 혜택 확대, 다만 구체적 수준은 미정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
특징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ISA와 중복 가입 불가	-

木목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대상) 국내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국내 거주자)
- (국내 고배당 상장법인)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① 또는 ② 충족 법인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제외) 공모펀드(ETF 포함), 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 · 분기 · 결산배당 포함) *주식배당 제외
  – (적용세율)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	2000만원~3억원	3억원~50억원	50억원 초과
적용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14%	20%	25%	30%

자신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는 법

1. '무엇을 했다'보다 '무엇을 바꿨다'에 집중한다
업무를 설명할 때 단순히 수행한 일을 나열하면 성과의 의미가 흐려진다.
"보고서를 작성했다"보다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처럼 결과의 변화를 중심으로 말해야 한다.
가치는 행동이 아니라 변화에서 드러난다.

2. 수치와 근거를 활용한다
가치는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을 가진다.
막연한 표현 대신 성과를 수치, 비교, 전후 변화로 정리한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자기 설명은 자랑이 아니라 정보가 된다.

3. 조직의 목표와 연결한다
개인의 성과는 조직의 방향과 연결될 때 의미가 커진다.
자신의 업무가 팀이나 회사의 목표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설명한다.
이 연결 고리가 명확할수록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4.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을 만든다
가치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종료 후 배운 점, 개선한 부분, 성과를 짧게라도 기록해 둔다.
이 기록은 보고, 평가, 면담 상황에서 강력한 자료가 된다.

5. 겸손과 침묵을 혼동하지 않는다
겸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침묵은 자신의 기여를 지우게 된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책임의 표현이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가치는 타인도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최 신 판 례 예 규

Marketing Tax consulting ①

폐기물 매립장이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효용을 갖고 거래되는 구조물이면 토지계정 아님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646, 2025.06.25

▌질 의

-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하 "특정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이 아닌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특정주식 여부 판정시 폐기물 매립장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로 보아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폐기물 매립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사전법규법인-68, 2025.06.24

▌질 의

-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변동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②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1,200만원 업무추진비의
기본 한도가 적용됨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45, 2025.04.17

▌질 의

• 질의인은 직업운동가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사업자임

-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함(업종코드 940904 기타 스포츠서비스/직업운동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

질의

○「소득세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면세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4.7.1. 이후「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주택법」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336, 2025.05.29

▌질 의

•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24.7.1. 이후「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조 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또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2016.8.12. 법률 제138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현재「주택법」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함)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2024.7.1.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역시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70조 육박…또 최대치 갱신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천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물가 상승, 실질소득 증가와 산업 간 임금 격차 확대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상위 소득 구간으로 이동한 점 등이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3.입니다

- 국세청, 2026. 2

□ (주요사항)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3.(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❶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❷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2]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

⇒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26.5.1.~6.1.)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공통)		

*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 |

구 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내거래1)	장외거래	K-OTC 시장	K-OTC 시장 外
대 주 주	○(❶) [사전안내]	○(❶) [사전안내]	○(❸) [사전안내]	○(❸) [조건부 사전안내2)]
소액주주	- * 신고대상 아님	○(❷) [사전안내]	(중소·중견기업 제외)	

1)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2)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 (안내일정) 국세청은 2월 4일(수)부터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등)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2.10.)합니다.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1차 발송(2.4.)		2차 발송(2.5.)		3차 발송(2.6.)		4차 발송(2.10.)
카카오톡	→	(1차 실패 시)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Pay	→	(2차 실패 시) 통신3사 문자	→	(3차 실패 시) 우편 안내문

□ (신고도움)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비과세 자가진단」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주식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목명), 양도내역(양도일자, 양도유형,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입력 시)

○ (양도내역 일괄처리)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습니다.

○ (비과세 자가진단)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비과세 자가진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 또는 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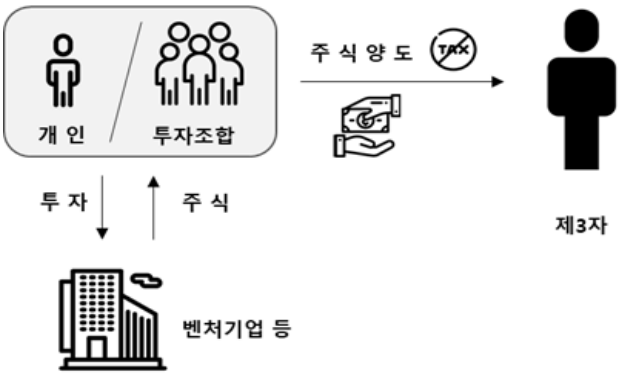

□ (당부말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참고 1 최대주주 그룹의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 최대주주 그룹이란?

○ 주주1인등(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1인등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합니다.

주주1인의 특수관계자(법인령 § 43⑧1)
가) 친족(국기령§1의2①)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다) 주주1인+친족(가)+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나)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라) 주주1인+친족(가)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마) (다+라)법인이 30%이상 출자한 법인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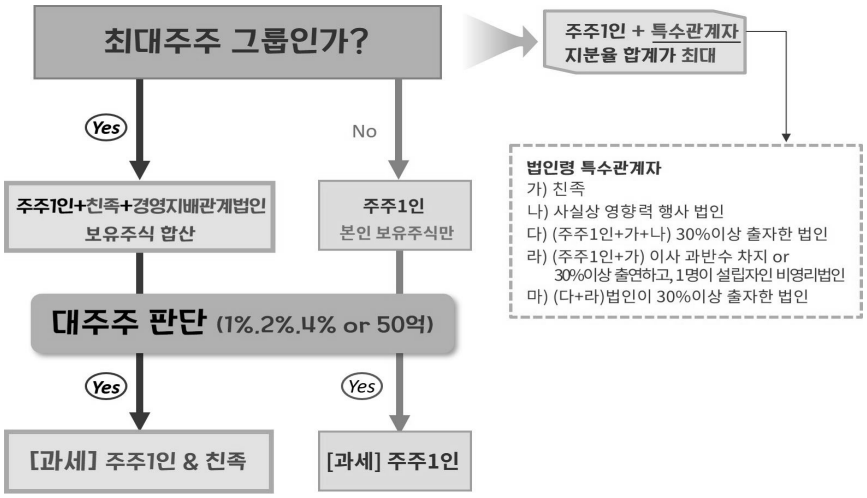

참고 2-1 개선된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화면

미리채움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취득·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세율 선택 순으로 신고화면을 재구성하여 편의성 제고

참고 2-2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양도 일자와 종목이 동일한 경우, 신설된 양도내역 복수 선택 기능을 통해 선택된 양도주식수·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

참고 3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주요 문답(Q&A)

Q 1 모든 창업기업 등에의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서 정한 ① 출자 대상 기업, ② 출자 방식, ③ 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2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3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판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유형의 경우(조특법§14①4,8 등)는 출자일부터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취득 후 즉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형별 보유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4 한 번 비과세를 받으면 이후 투자도 계속 비과세가 되나요?

A. 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조특법 제14조는 투자 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5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특례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발행'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6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

A.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의 '주식 비과세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국세청, 2026. 2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1세대 2주택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 +30%p
- (적용대상)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적용유예)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26.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26.2.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25곳)
-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12곳)

【❶ 기존 조정대상지역】

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

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❷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❸ 임대 중인 주택】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6.27대책)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1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1. 5.9일 전 체결하는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으로도 중과가 유예 되는 것인지?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6.5.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2. 5.9일까지 계약한 후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예: 3개월)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실거주 해야하는지?

☞ 허가일로부터 잔여임대차계약이 4개월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과 같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만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됩니다.

3. 임대중 주택의 경우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데,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는 것인지?

☞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ㅇ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4.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 등기하도록 유예되었는데,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허가 후 4개월 내 실입주인데도, 6개월 내 잔금 ·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 가능합니다.

ㅇ 신규 지정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하고,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하면 됩니다.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5.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허가 가능한 것인지?

☞ ‘26.2월 내 관련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합니다.

ㅇ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일(영업일) 이내* 허가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 (예시) 2.12일 신청하는 경우 영업일 15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 가능

6.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는지?

☞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ㅇ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ㅇ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가 제출이 필요하며, 다주택자 및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추가로 요청될 예정입니다.

7. 매수자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고 했는데,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허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8.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 유예는 매도인이 1주택자일 때도 가능한 것인지?

☞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 이번 실거주 유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한시적 보완 조치로서 매도인이 해당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9.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APT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는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지?

☞ 구입한 APT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 ㅇ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과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APT를 취득하면 해당 APT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대출이 회수됩니다. ('20.6.17일~)
- ㅇ 다만, 취득한 APT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는 APT 취득자의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 "APT 취득 차주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 APT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만 전세대출 이용 가능

참고 2 주택 소재지 · 임대 여부별 주택거래 흐름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부동산 거래절차」

구 분		①허가신청 →	②허가심사 →	③계약 →	④잔금·등기
기존 원칙		(매도인) 제한없음 (매수인) 제한없음	시·군·구청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 처분 * 영업일 기준	허가일부터 4개월 내 계약	(잔금·등기)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입주)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임대차·전세권 설정된 주택 용지	신규 조정 대상 지역	(매도인) 다주택자 (매수인) 무주택자 (토허신청일 기준)	시·군·구청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 처분 * 영업일 기준	5.9까지 계약	(잔금·등기)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입주) 최초 임차종료일까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 단, 발표일부터 2년('28.2.11.) 내 입주 필요
	강남3 + 용산				(잔금·등기)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입주) 최초 임차종료일까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 단, 발표일부터 2년('28.2.11.) 내 입주 필요
임대차·전세권 없는 주택 용지*	신규 조정 대상 지역	(매도인) 다주택자 (매수인) 제한없음	시·군·구청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 처분 *영업일 기준	5.9까지 계약	(잔금·등기)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입주) 허가일부터 6개월 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강남3 + 용산				(잔금·등기)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입주) 허가일부터 4개월 내,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 4개월(강남3+용산) 또는 6개월(신규조정지역) 이내에 현 임대차계약 종료, 전세권 소멸

되는 물건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조정대상지역별 취득 및 입주 구분」

구 분	잔금·등기	입주·실거주
신규 조정대상지역	5.9까지 계약체결 후 6개월 내	(임대차·전세권) 최초임차종료일부터 2년간(예외) (그외*)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예외)
강남 3구 및 용산	5.9까지 계약체결 후 4개월 내	(임대차·전세권) 최초임차종료일부터 2년간(예외) (그외*) 허가받은 날부터 4개월(원칙)

* 4개월(강남3+용산) 또는 6개월(신규조정지역) 이내에 현 임대차계약 종료, 전세권 소멸되는 물건 포함

참고 3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의무 유예 방안

□ (현행)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구입목적 주담대시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의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일))

□ (개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매매거래에 한해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전입의무 이행

요건	내 용	비 고
매도인	❶ 주택 매도인이 다주택자 * 매매계약체결일 기준 매도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주택의 소재지와 무관)	· ❶~❻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매매거래에 한하여 주담대 전입의무 유예 · (❶·❸ 관련) 금융회사가 주택매도인의 개인정보를 활용(여신심사)하기 위해 주택매도인의 정보제공·활용동의 징구 이후 매도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 매도인의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여부 등을 증빙 * (예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보유주택의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서 등 · (❻ 관련)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증빙 * (예시) 임대인승계계약서, 임대인변경 확인서 등
매수인	❷ 주택매수인(세대기준)이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대상 주택	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매도인이 잔금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필요)	

주택 거래 시점	❹ '26.5.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❺ 잔금일(주담대 실행일)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대책 前 기존 조정지역)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15대책 後 신규 조정지역)	
임대차 승계여부	❻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주택거래 * '26.2.12일(대책발표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28.2.11일 이전일 것 ** 잔금일(주담대 실행일) 이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지속 거주	
전입시기	❼ 전입의무를 현행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유예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행	· 실거주 이후 전입신고까지 시간 소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 이행시) 현행과 동일
(임대차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의무 이행시) ❶~❻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금융회사는 추가서류 징구 등을 통해 ❶~❻ 충족여부 확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 2026. 2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 (공제율) '26년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3천만원 이하분) 40%, (3천만원~5천만원 이하분)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분) 10%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참 고	개정안 주요내용

1.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ㅇ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❶ '26.3.31.까지 매도: 100% 공제 ❷ '26.6.30.까지 매도: 80% 공제 ❸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비율 조정 [조정 비율] $1 - \frac{\text{외해외주식순매수금액}}{\text{내해외주식매도금액}}$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조특법 §91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이하 '환헷지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환헷지 상품 투자 ㅇ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ㅇ (한도) 5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 (환헷지 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환시장 안정화 세제지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추 가>	□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조특법 §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익금불산입률) 95%	□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ㅇ (좌 동) ㅇ (익금불산입률) 100% -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ㅇ (적용기한) ’26.1.1.~12.31.

<개정이유>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9, §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❶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❷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❸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신 설>

ㅇ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시 적용

ㅇ (세제지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투자금액	공제액
3천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7천만원 초과	1,800만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 (배당소득)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

ㅇ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ㅇ (한도) 투자금액 2억원

ㅇ (적용기한) '30.12.31.까지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6.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추 가>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ㅇ (좌 동) ㅇ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8, §129의2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대한 과세특례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 ㅇ (요건)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ㅇ (과세특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납입한도) 2억원 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6일 (금)	2월 9일 (월)	2월 10일 (화)	2월 11일 (수)	2월 12일 (목)	2월 13일 (금)	2월 19일 (목)
미 달 러 (USD)	1464.10	1470.30	1464.30	1457.70	1454.40	1443.40	1443.10
일 본 엔 (JPY)	932.46	932.81	938.89	943.62	949.29	944.73	932.63
영 국 파 운 드 (GBP)	1981.00	1999.61	2005.21	1987.21	1981.18	1966.13	1947.90
캐 나 다 달 러 (CAD)	1068.06	1075.45	1079.67	1075.75	1071.26	1060.58	1053.78
홍 콩 달 러 (HKD)	187.37	188.18	187.36	186.45	186.08	184.67	184.68
위 안 화 (CNH)	210.86	211.82	211.40	210.84	210.66	209.26	208.96
유 로 화 (EUR)	1724.49	1736.72	1743.98	1733.28	1726.59	1713.39	1701.27
호 주 달 러 (AUD)	1014.47	1033.18	1038.04	1031.03	1036.55	1023.30	1016.66
싱 가 폴 달 러 (SGD)	1148.18	1156.31	1157.37	1152.29	1152.37	1143.20	1138.68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70.94	372.46	372.17	371.53	371.49	369.87	370.03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 국세청, 2026. 2

1 추진배경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 [(상속재산 300억 - 배우자·일괄공제 10억) × 50% - 누진공제 4.6억] - 신고세액공제 4.2억 = 136.2억

○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정의에도 반합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자산 규모가 큰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2 추진내용

□ 금번 실태조사는 세금 추징을 위한 세무조사가 아닌, 가업상속공제 제도 악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현황 파악으로서

○ 그 결과를 향후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집행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안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 따라서 전수조사 형태가 아닌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및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위장하여 운영하는지 여부 등 등록된 업종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유형 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例)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실제 제과시설 등 없이 소량의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고,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사실상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다음으로, 사업장 및 넓은 부수토지·시설·주차장 등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2 사업장 부수토지 내 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용 자산 여부 확인

例)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넓은 부수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하여 사업장 부수토지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확인 필요

○ 또한,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살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유형 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父가 베이커리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例) 오랜 기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70대)의 A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 자녀 B(40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

-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필요

○ 마지막으로, 가업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도 가능한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 등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 4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 실제 경영 여부 확인

例) 기존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무한 고령(80세)의 母와 자녀 2명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가능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제 요건 등의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현황 파악 중 창업자금 증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적극 장려·보호하는 한편,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1 주요 실태 확인사례

사례 1	사실상 커피전문점인지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 확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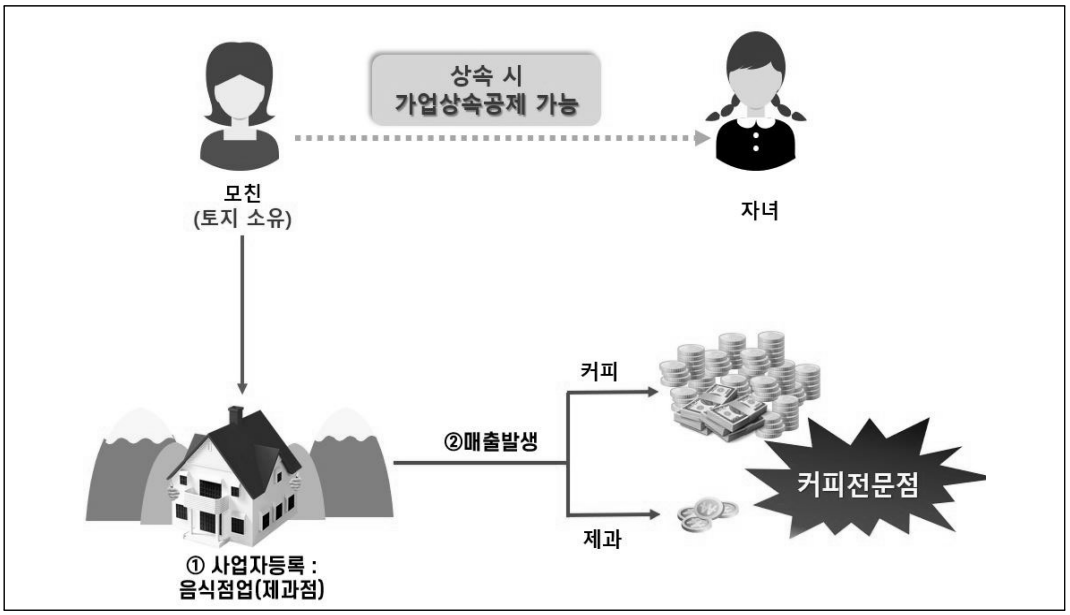

□ 현 황

○ A는 경기도 OO시에서 제과점업으로 등록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스무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 메뉴와 넓은 매장, 현대적인 인테리어 등으로 크게 인기

○ 신고자료를 확인한 바, 제과 관련은 소량의 완제품 케이크 매입만 있고, 커피·티 등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2배 이상 높으며

- 제과 매대는 카운터 옆 소규모 냉장고 시설이 전부로 확인

□ 검토결과

○ 실제 음료점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제과점업으로 업종을 위장 등록한 혐의가 있어 개별 확인 필요

사례 2	베이커리카페 부수토지 내 주택 소재하여 부수토지의 사업용자산 여부 확인

□ 확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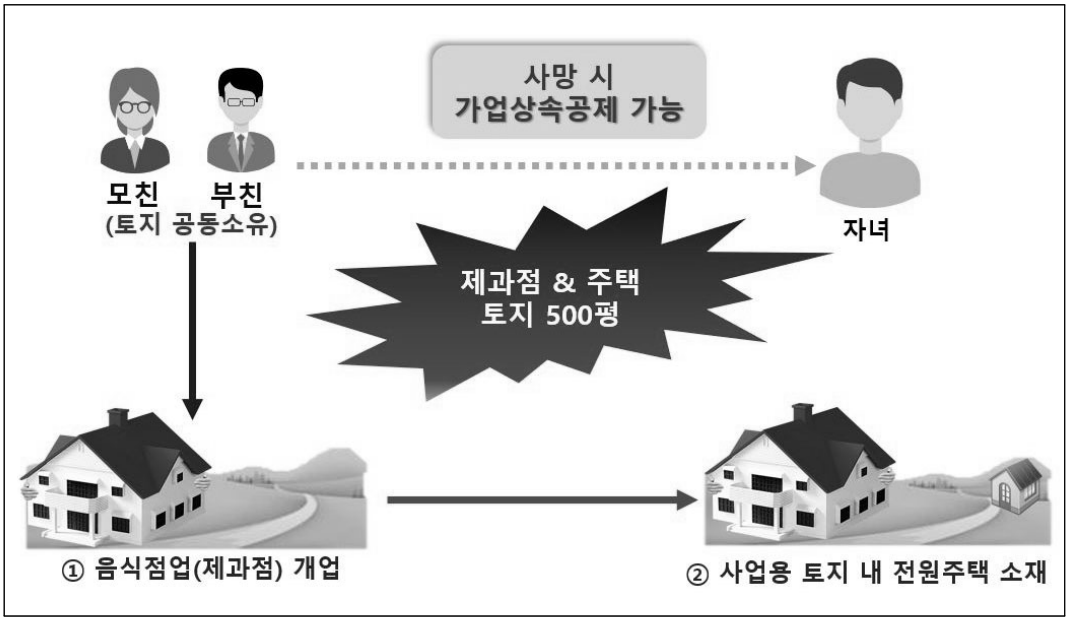

□ 현 황

○ 부부인 A와 B는 공동소유 토지에 베이커리카페를 운영

- 해당 베이커리카페는 수목원을 연상케 하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며 건물 면적(60여평) 대비 부수토지(500여평)가 매우 넓음

○ 사업자등록상 건물과 부수토지를 전부 사업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토지 내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소재한 것으로 확인

□ 검토결과

○ 사업장으로 신고한 부수토지 중 일부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 부수토지인지 등에 대한 개별확인 필요

사례 3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父가 베이커리카페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 확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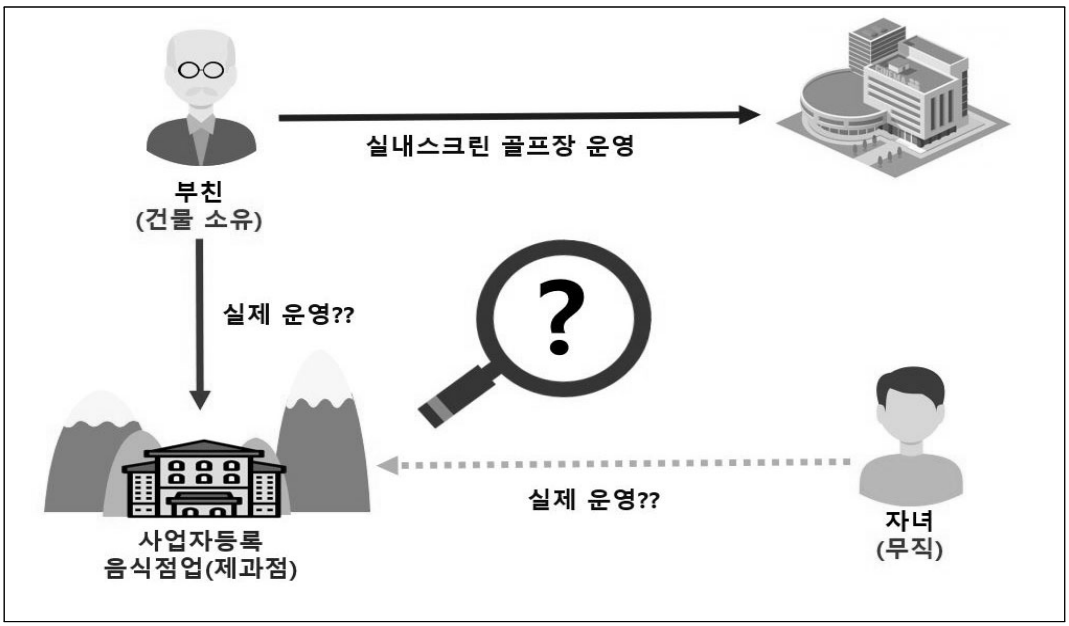

□ 현 황

○ 고령의 A(70대)는 수십 년 동안 실내 골프연습장, 부동산업 등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 현재도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소재 본인 소유 건물에 '24년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

○ 자녀 B(40대)는 해당 베이커리카페 개업 직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 소득 발생 내역 없음

□ 검토결과

○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령의 父가 베이커리카페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사례 4	가족법인 베이커리카페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母가 법인을 실제 경영하는지 확인

□ 확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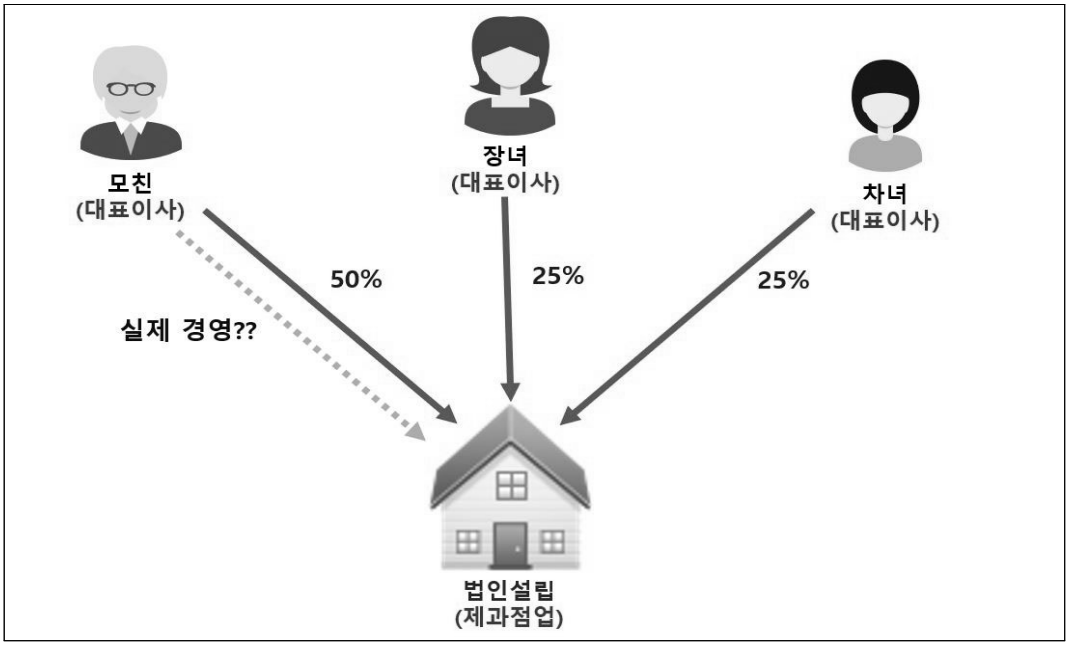

□ 현 황

○ 고령의 A(80세, 지분 50%)는 자녀 B(지분 25%), C(지분 25%)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 A는 기존에 근로·사업내역 등이 전혀 없음

□ 검토결과

○ 사업 이력 등이 전무한 고령의 母가 베이커리카페 법인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확인 필요

참고 2 가업상속공제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개인, 법인)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제도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공제한도액	적용안됨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 (대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으로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상속개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요건)

○ 피상속인 : ①법인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②법인·개인 가업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대표자)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전체 가업기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상속인(개인·법인 동일) :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사후관리기간) 5년

요 건	내 용
자산처분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가업종사	▸대표이사 유지, 주된 업종 유지 등
지분유지	▸상속인 지분 유지
고용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일정기준* 유지 * 상속개시일 전 2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90% 이상 * 상속개시일 전 2년 총급여액 평균 90% 이상

참고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및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되는 대표 업종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
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유치원, 병원, 여행사	복권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미용실, 세차장, 부동산임대업

□ 가업상속재산 범위

○ (개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 담보 채무액을 뺀 가액

* 상증령 §15 개정으로 '25.2월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비사업용토지, 임대부동산, 임직원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

○ (비사업용토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 초과 토지
-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초과 토지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참고 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 (개요)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업 요건을 갖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 세율(120억원 초과시 20%)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증여자 가업영위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공제한도액	적용안됨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 증여'가 대상이므로 법인만 적용 가능

□ (대상)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으로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3]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1)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2) 상속개시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준용

□ (요건)

○ 증여자 : ①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며, ②가업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이사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 수증자 : ①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사후관리기간) 5년

요 건	내 용
가업종사	▸ 대표이사 유지, 주된 업종 유지 등
지분유지	▸ 수증자 지분 유지

참고 5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개요

□ (개요) 가업승계를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 도입('22.9월)

○ 컨설팅 신청 사업자의 사전·사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공제·특례 적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1:1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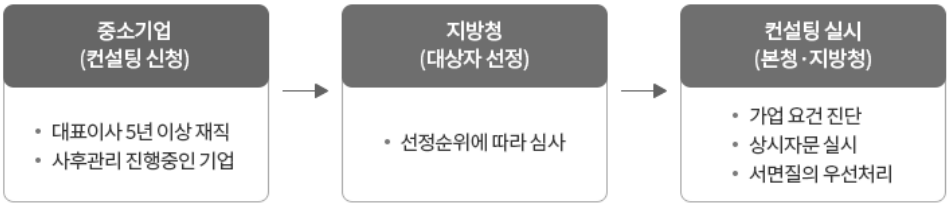

□ (신청대상) 소규모 중소기업*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중소기업,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

□ (신청방법) 매년 7월 국세청 홈택스, 우편, 직접 방문으로 신청

□ (선정순위)

①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명문장수기업, 백년가게 등 30년 이상 장수기업

③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④ 최근 5년 이내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 모범납세 기업

□ (컨설팅 실시) 매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9.1.부터 1년간 실시

○ (정기컨설팅) 1회 이상 출장하여 현장 컨설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요청시 서면 컨설팅도 가능

○ (상시자문) 컨설팅 대상자가 자문 요청시 의견을 제시하고, 가업승계 관련 서면질의시 우선 처리 등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국세청, 2026. 2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

①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 건설회사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함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음
③	소득이 전혀 없는데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 발생

○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나 과다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정정 요청

○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1))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2)으로 발송합니다.

- 추가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반기)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 사업소득자(배달라이더 등)·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의 '실시간 소득자료'

2) 카카오 · 네이버 · SMS 문자로 발송하고,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서면 안내문 발송

②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

-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세행정)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행정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연간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기대 효과)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붙임 1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사례 1 [지급명세서]	인력사무소에서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건설회사에 제공하고, 건설회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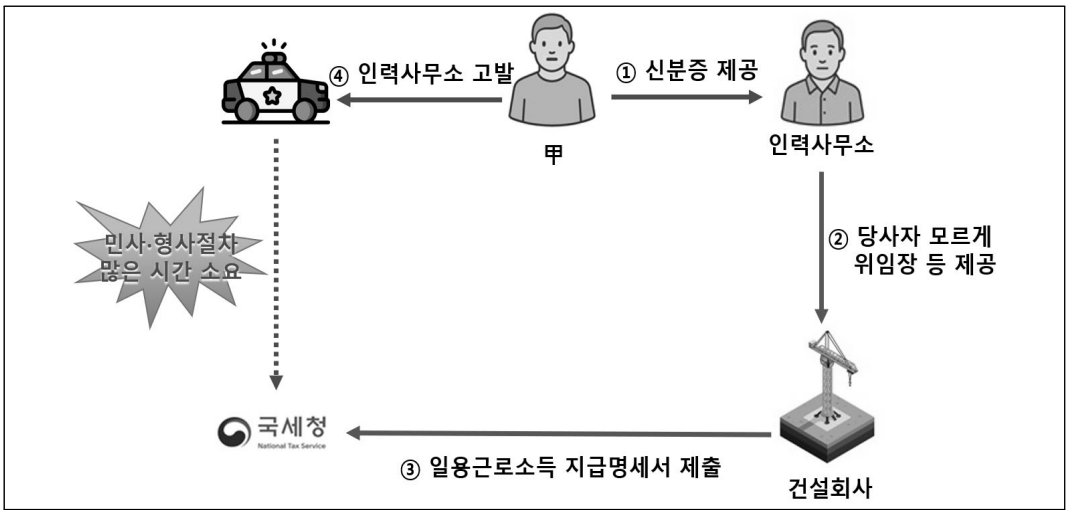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 甲은 실업급여 신청과정에서 일하지 않은 건설회사 등 10여곳에서 甲을 소득자로 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을 발견

- 인력사무소는 甲이 맡긴 신분증을 동의 없이 활용하여 건설회사에 개인정보와 급여 대리 수령 위임장을 제공

○ 건설회사가 실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세서 수정을 거부하자 甲은 인력사무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

○ 甲은 소득이 증가하여 부모님의 장애인수당, 근로장려금,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고

-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을 방문하며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기대 효과

○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즉시 제출 내역을 확인 후 바로잡아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이용 가능

사례 2 [지급명세서]	2년 전 퇴직한 회사에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을 세무 플랫폼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회사에 정정 요구하였으나 불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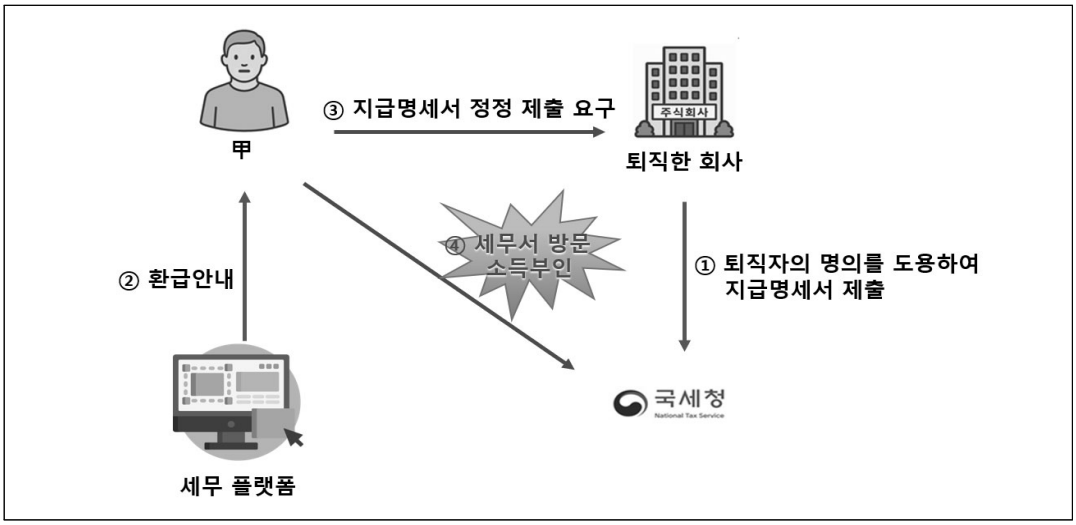

□ 사실 관계 및 명의도용 내용

○ 甲은 세무 플랫폼에서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니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세부내역을 조회하였고 20XX년까지 근무한 회사로부터 사업소득 ○백만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것을 발견

- 퇴사한지 수년이 지난 업체 대표에게 연락하니 잘못 신고한 것을 정정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甲은 업체 대표의 조치만 기다리다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받았고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었음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기대 효과

○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경우 알림톡 수신 후 소득부인 신청하면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등 부과 방지

붙임 2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부 내용

1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 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 (모두 신청 가능)

/ '제출알림'과 '즉시검증' 서비스 내용 /

① [제출알림]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 할 경우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안내
㉡ 안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신청인은 알림톡에서 제출 내역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인 경우 손택스로 이동하여 소득부인 신청(홈택스에서도 가능)

② [즉시검증]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
㉠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 담당자가 즉시 검증 실시
㉡ 세무서 담당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소득 지급명세서 삭제

2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신청 차단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모두 신청 가능)
- 다만, 본인*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해지 후 신청 가능
  * 홈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3 (연간 지급명세서*) 사업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위해 1년간 소득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4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소득금액증명, 소비제세 관련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차단하더라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로는 환급계좌개설 신고 가능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 발송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

Q1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지할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Q2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엇이 차단되나요?

○ 신청인 명의로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연간)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알림톡이 발송되며 사업자등록(본인·대리인), 민원 증명 발급(대리인),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전화 요청)이 차단됩니다.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Q3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 명의도용을 우려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리인도 (해지)신청할 수 있나요?

○ 본인만 (해지)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5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면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나요?

○ 명의도용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차단되었던 사업자등록 신청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Q6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손택스(모바일)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

Q7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나요?

○ 원하는 국세행정 업무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6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을 신청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즉시검증」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되는 (일용·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검증을 실시합니다. 제출자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출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는 삭제됩니다.

Q9	일용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알림」과 「즉시검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알림톡은 어느 경우에 발송되나요?

○ 담당자가 검증을 실시하여 정상 소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이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인이 알림톡 확인 후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첨부하여 다시 소득부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0	사업자등록 차단을 신청하면 기존에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나요?

○ 아니요,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처리 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의 신규 사업자등록이 차단됩니다.

Q11	민원 증명 발급 차단을 신청하면 본인도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아니요, 민원 증명은 대리인에 의한 증명 발급을 제한합니다. 본인은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Q12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신청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알림톡이 발송되나요?

○ 아니요,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인에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